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30
----------	-----------

제안년월일 : 2023년 4월 21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설한 각하 규정이 피해자 중심에서 벗어나 오히려 피해자를 위축시키거나 가해자를 입장을 반영하는 장치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각하 요건을 삭제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의 각하 요건 중 제2호의 “신청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성희롱·성폭력·2차 가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와 제7호의 “심의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를 삭제함(안 제21조의9제1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6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1조의5(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의·의결에 서 제척된다.</p> <p>1. 위원 또는 그 배우 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u>당사자와 친족(친족 이었던 자 포함) 관 계에 있는 경우</u></p> <p>2. (생 략) ②·③ (생 략)</p> <p>제21조의9(심의위원회 <u>심의결과 통지</u>) <신 설></p>	<p>제21조의5(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 ----- ----- ----- -----.</p> <p>1. ----- ----- ----- - <u>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등(이하 “당사자”라 한다)과</u> ----- -----</p> <p>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의11(권고 및 후 <u>속조치</u>) ① <u>심의위원 회는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가 있었다 고 판단한 경우 시장</u></p>	<p>제21조의5(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현행과 같 음)</p> <p>1. <u>(개정안과 같음)</u></p> <p>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의11(권고 및 후 <u>속조치</u>) ①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u>당사자</u>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u><신설></u></p>	<p><u>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u></p> <p>② ----- ----- ----- ----- ----- <u>당사자</u> 및 <u>조사대상기관의 장</u>----- -----.</p> <p>③ <u>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② (<u>개정안과 같음</u>)</p> <p>③ (<u>개정안과 같음</u>)</p>
<p><u><신설></u></p>	<p>제21조의9(신청의 각 하) ① <u>심의위원회는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u></p>	<p>제21조의9(신청의 각 하) ① <u>심의위원회는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1. 신청의 내용이 제21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u></p>	<p><u>1. (개정안과 같음)</u></p>
	<p><u>2. 신청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성희롱·성폭력·2차 가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u></p>	<p><u><삭 제></u></p>
	<p><u>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청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u></p>	<p><u>2. (개정안과 같음)</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명백한 경우</u></p> <p><u>4.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u></p> <p><u>5. 신청이 제기될 당시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u></p> <p><u>6.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u></p>	<p><u>3. (개정안과 같음)</u></p> <p><u>4. (개정안과 같음)</u></p> <p><u>5. (개정안과 같음)</u></p>
	<p><u>7. 심의위원회가 각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u></p>	<p><u><삭 제></u></p>
	<p><u>8.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u>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u></p>	<p><u>6. (개정안과 같음)</u></p> <p><u>② (개정안과 같음)</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 data-bbox="204 546 373 584"><신설></p>	<p data-bbox="635 349 997 517"><u>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 data-bbox="596 546 997 965"><u>제21조의10(신청의 기각) ①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조사한 결과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u></p> <ol data-bbox="635 987 997 1850"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635 987 997 1279"><u>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u> <li data-bbox="635 1301 997 1536"><u>2.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u> <li data-bbox="635 1559 997 1850"><u>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p data-bbox="635 1872 997 1910"><u>② 심의위원회는 신</u></p>	<p data-bbox="1023 546 1423 651"><u>제21조의10(신청의 기각) (개정안과 같음)</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제21조의10</u> (생략)</p>	<p><u>청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u></p> <p><u>제21조의12</u> (현행 제21조의10과 같음)</p>	<p><u>제21조의12</u> (현행 제21조의10과 같음)</p>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제1항제1호 중 “당사자와”를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등(이하 “당사자”라 한다)과”로 한다.

제21조의9의 제목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를 “(권고 및 후속 조치)”로 하여 제21조의11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1조의9)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당사자”를 “당사자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2차 가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10을 제21조의12로 하고, 제21조의9와 제21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9(신청의 각하) ① 심의위원회는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의 내용이 제21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청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4. 신청이 제기될 당시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6.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10(신청의 기각) ①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조사한 결과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의5(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p>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u>당사자와 친족(친족이었던 자 포함) 관계에 있는 경우</u></p> <p>2. (생략)</p> <p>②·③ (생략)</p> <p><u>제21조의9(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신 설></u></p> <p>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u>당사자</u>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1조의5(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 ----- -----.</p> <p>1. ----- ----- <u>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등 (이하 “당사자”라 한다)과</u> ----- -----</p> <p>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제21조의11(권고 및 후속조치) ①</u> <u>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2차 가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u></p> <p>② ----- ----- ----- ----- <u>당사자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u>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u></p> <p>5. <u>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u></p> <p>6. <u>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② <u>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제21조의10(신청의 기각) ① <u>심의위원회는 신청을 조사한 결과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u></p> <p>1. <u>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u></p> <p>2. <u>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u></p> <p>3. <u>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u></p>

현행	개정안
<p><u>제21조의10</u> (생략)</p>	<p><u>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u></p> <p><u>제21조의12</u> (현행 <u>제21조의10</u>과 같음)</p>